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121 호  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07년 월 일<br>(제 회) |

**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의자   | 최광옥 의원 외 7인 |
| 발의연월일 | 2007년 6월 4일 |

##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121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07년 6월 4일

발의자 : 최광옥 의원외 7인

### □ 제안이유

조례중 「위탁계약의 취소」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

### □ 주요내용

#### 가. 위탁계약의 취소사유 구체적 명시 (안 제16조)

- “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”를 ⇒ “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”로 개정

#### 나. 일부 불합리한 조문 정비

- “체육청소년과장”을 ⇒ “충청북도지사”로 개정

### □ 참고자료

- 관계법령 : 따로붙임

##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”를 “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

제6조제2항·제9조제2항중 “과장”을 “도지사”로 하며, 제6조제3항 내지 제4항·제9조제3항·제11조제1항중 “과장은”을 “도지사는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u>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</u>   | <u>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</u>  |
| 제5조(운영계획)① <u>체육청소년과장</u> (이하 “과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| 제5조(운영계획)① <u>충청북도지사</u> 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(생략)   | ② (현행과 같음)  |
| 제16조(위탁계약의 취소)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br>1. <u>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</u> | 제16조(위탁계약의 취소) .....<br>.....<br>.....<br>1. <u>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</u> |
| 2.~4. (생략)   | 2.~4. (현행과 같음)  |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15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

**제12조(복지여성국)** 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6. 영유아 보육·아동·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

### □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

**제12조(복지여성국에 두는 과)** ① 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, 여성정책과, 경노재활과, 청소년아동과, 보건위생과를 둔다.

②~⑥(생략)

- ⑦ 청소년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2. 청소년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청소년시설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